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592734		
등록번호	110111-5927342		
상호 ⓒ	아파트멘터리 주식회	사	
	어울특별시 강남구 약 삼)	<del>역삼로17길 51, 5층 535호(역삼동, 미드타운센터 역</del>	
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원	일 <u>드컵로19길 74, 303호(망원동)</u>	2016.04.25 변경 2016.04.27 등기
<i>,</i>	서울특별시 강남구 호	<del>부동로77길 24, 6층(청담동)</del>	2017.02.10 변경 2017.02.17 등기
ڔ	서울특별시 용산구 ﴿	한남대로 <del>20길 47-9, 4층(한남동)</del>	2017.10.30 변경 2017.11.02 등기
ر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	<del>내사관로11길 20 16, 3,4층(한남동)</del>	2019.09.02 변경 2019.09.05 등기
. پ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	<del>도산대로 237, 4층(신사동)</del>	2021.07.29 변경 2021.07.29 등기
,	서울특별시 강남구 5	E산대로 237, 3층, 4층(신사동)	2022.04.13 변경2022.04.15 등기
공고방법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개재한다.	
	. 다만, 전산장애	헤이지(https://www.apartmentary.com)에 게재한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	2017.10.30 변경 2017.11.02 등기
1주의 금액	<del>금 1,000 원</del>		
	금 100 원		2018.03.24 변경 2018.03.28 등기
발행할 주	식의 총수 <sub>40,000</sub> <sup>-</sup>	<u> </u>	
	1,000,00	0 주	2017.09.27 변경 2017.10.12 등기
	100,000,	000 주	2018.03.24 변경 2018.03.28 등기

1/26

592734

발행주식의 총 그 종류 및 각2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del>20,000 주</del>		
보통주식	<del>20,000 주</del>	<del>금 20,0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22,500 주</del>		2016.07.12 변경
보통주식	<del>20,000 주</del>		2016.07.14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del>	<del>2,500 주</del>	<del>금 22,5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28,930 주</del>		2017.09.13 변경
보통주식	<del>20,000 주</del>		2017.09.13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del>2,500 주</del>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6,430 주</del>	<del>금 28,93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231,440 주</del>		2017.10.12 변경
보통주식	160,000 주		2017.10.12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del>20,000 주</del>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u> 51,440 주</u>	<del>금 231,440,000</del> 원	
발행주식의 총수	<del>2,314,400 주</del>		2018.03.24 변경
보통주식	1,600,000 주		2018.03.28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14,400 주	<del>금 231,440,000</del> 원	
발행주식의 총수	<del>2,919,247 주</del>		2019.06.26 변경
보통주식	1,643,789 주		2019.06.26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14,400 주	> 1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561,058 주	<del>금 291,924,700</del> 원	
발행주식의 총수	<del>2,921,341 주</del>	7	2020.11.02 변경
보통주식	1,645,883 주		2020.11.03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del>	<del>200,000 주</del>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14,400 주</del>		
<del>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61,058 주</del>	<del>금 292,134,1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2,958,757 주</del>		2022.04.01 변경
보통주식	1,645,883 주		2022.04.04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514,400 주</del>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del>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37,416 주	<del>금 295,875,7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981,206 주		2022.04.14 변경
보통주식	1,645,883 주		2022.04.15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14,40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561,058 주		
제4중상환전환우선주식	<u> 59,865 주</u>	<del>금 298,120,600</del> 원	

592734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del>3,354,674 주</del>		2022.04.28 변경
<del>보통주식                                    </del>	1,645,883 주		2022.05.03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del></del>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514,400 주		
<del>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del>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433,333 주	<del>금 335,467,400</del> 원	
발행주식의 총수	<del>3,366,178 주</del>		2022.06.17 변경
보통주식	1,657,387 주		2022.06.20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del>200,000 주</del>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14,400 주</del>		
<del>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61,058 주</del>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433,333 주</del>	<del>금 336,617,800</del> 원	
발행주식의 총수	<del>3,472,927 주</del>		2022.09.01 변경
보통주식	<del>1,657,387 주</del>		2022.09.05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del>200,000 주</del>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14,400 주</del>		
<del>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61,058 주</del>		
<del>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433,333 주</del>		
<del>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106,749 주	<del>금 347,292,700</del> 원	
발행주식의 총수	<del>3,473,125 주</del>		2022.10.19 변경
보통주식	<del>1,657,585 주</del>	- 3	2022.10.28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 주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514,400 주	7 4	
<del>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561,058 주	7 0	
제4중상환전환우선주식	<del>433,333 주</del>		
<del>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106,749 주</del>	<del>금 347,312,5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del>3,515,457 주</del>		2023.03.24 변경
보통주식	1,699,917 주		2023.04.04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del>200,000 주</del>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14,400 주</del>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561,058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433,333 주		
제5중상환전환우선주식	106,749 주	<del>금 351,545,700</del> 원	
발행주식의 총수	<del>3,545,442 주</del>		2024.01.26 변경
보통주식	1,729,902 주		2024.01.30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del>200,000 주</del>		
<del>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del>514,400 주</del>		
<del>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del>	561,058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433,333 주		

592734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 및 각각의		자본금의 액	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749 주	<del>금 354,544,2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3,572,987 주		2024.02.02 변경
보통주식	1,757,447 주		2024.02.07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514,400 주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561,058 주		
제4종상환전환우선주식	433,333 주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106,749 주	금 357,298,700 원	

목 적

- 1. 실내인테리어 디자인업
- 1.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 1. 가구 도매업
- 1. 가구 소매업
- 1. 가구 온라인 판매업
- 1. 가구 온라인 중개업
- 1. 상가 임대업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윤소연 830703-*****	
2018 년 12 월 24 일 중임	2018 년 12 월 27 일 등기
2021 년 12 월 24 일 중임	2022 년 01 월 03 일 등기
<del>사내이사 하태웅 840509-******</del>	I O
2018 년 12 월 24 일 중임	2018 년 12 월 27 일 등기
2021 년 12 월 24 일 중임	2022 년 01 월 03 일 등기
2023 년 03 월 30 일 사임	2023 년 04 월 04 일 등기
사내이사 한은비 861001-******	
2016 년 07 월 11 일 사임	2016 년 07 월 14 일 등기
<del>감사 손창우 780731-*****</del>	
2018 년 03 월 30 일 중임	2018 년 04 월 16 일 등기
2021 년 03 월 17 일 중임	2021 년 03 월 30 일 등기
2022 년 12 월 28 일 사임	2023 년 01 월 06 일 등기
	<u>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57, 610동 703호(상암동, 상암월</u>
드컵파크6단지)	
	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102동 3705호(서교동, 메세나폴리
<u>스)</u>	0010 14 10 0) 14 0) 57
	2016 년 12 월 14 일 등기
·	2018 년 12 월 27 일 등기
	<u>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5길 8, 204동 1201호(이촌동, 한가람이</u>
<u>파트)</u> 2020 년 01 일 20 이 조사버건	2020 13 11 9 02 6  = 7
2020 년 01 월 20 일 주소변경	2020 년 11 월 03 일 등기 <del>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5길 8, 204동 1201호(이촌동, 한가</del>
<u>○○○川並川小 正工行 ○○U/Uɔ=*******</u>	<u> </u>

등기번호	592734	
람아파트)		
	i 10 월 30 일	공동대표규정설정 2020 년 11 월 03 일 등기
		중임 2022 년 01 월 03 일 등기
l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10, 103동 1202호(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TE TE TO ET TE STO, 1000 130311 ( TE 0 ; " TE
		주소변경 2022 년 11 월 25 일 등기
	<u> </u>	
	면 04월 25일	
	면 03월 17일	
	<u>년 윤정 821022-****</u>	
	면 07월 11일	
	면 07월 11일	
	<u> </u>	
	면 10 월 30 일	
	면 10월 30일	
	<u>크 10 월 30 월</u> <del>한은비 861001-***</del>	
	년 03 월 17 일	
	면 03월 17일	
	년 03 월 17 월 년 07 월 08 일	
	<u>1 07 월 08 월</u> 이사 진윤정 82102	
	· · · — •	
l .		취임 2019 년 07 월 16 일 등기
		중임 2022 년 07 월 14 일 등기
	<del>이사 전경미 86082</del>	
l e		취임 2019 년 07 월 16 일 등기
		임기만료 2022 년 07 월 14 일 등기
	김준영 850625-****	
l .		취임 2019 년 07 월 16 일 등기
		중임 2022 년 07 월 14 일 등기
	<del>이사 김혜진 8210</del> 2	
		취임 2020 년 11 월 03 일 등기
	면 05월 09일	
	<del>시 김준영 850625</del>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101동 204호(서초동, 서초아
<u> 트자이)</u>	ا ما الله ما الله	
l e		공동대표규정설정 및 취임 2020 년 11 월 03 일 등기
		중임 2022 년 07 월 14 일 등기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길 67, 501동 701호(서초동, 래
미안 서초5		
		주소변경 2022 년 08 월 01 일 등기
	이사 정세준 86031	
		취임 2022 년 06 월 14 일 등기
	이사 이창석 72080	
202 <sub>2</sub> \	<u>년 10월 14</u> 일	취임 2022 년 10 월 27 일 등기

592734

감사 최민석 850808-\*\*\*\*\*

2022 년 12 월 28 일 취임 2023 년 01 월 06 일 등기

##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상환우선주식

'본 우선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이며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이다.

제 1조 의결권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

- (1) '본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 (2)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만약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제 2-1조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 (1) '본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은 주식발행가액의 연복리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2)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본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어 누적된다.
- (3) '본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행한 후에도 분배 가능한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이 경우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최대로 발행되었을 수량의 전환신주(전환으로 인해 새로이 발행되는 보통주식)를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본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다음에 의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잔여재산분배에 앞서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평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1) 우선분배액: '본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금액
- 2) 참가분배액: '본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재산이 있어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행해지는 경우에 '본 우선주식'이 보통주식과 함께 참 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받는 금액. 단, 이때 '본 우선주식'의 수를 산 정함에 있어서는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더라면 최대로 발행되었을 전환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분배액'은 '본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응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본 우선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회사가 매각 등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그 분배는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 의제잔여재산에 대한 우선분배청구권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본 우선주식'에 대한 계약서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본 우선주주'들의 사전 또는 사후 서면 승인 하에 회사가 해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산 후의 계속결의로 인해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우선주주'는 회사 및/또는 주요주주들에 대하여 그가 소유한 보통주식과 '본 우선주식'을 포함한 모든 지분증권(단,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지분증권의 양도 대가로, 또는 그 양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산의제분배액(아래에서 정의됨)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592734

- (2) 청산의제분배액은 (i) 협의된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사를 청산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동시에 (ii) 협의된 계약서에서 정한 해당 거래의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회사가치를 청산을 위한 잔여재산('의제 잔여재산')으로 가정할 경우에 각 '본 우선주주'가 그가 소유하는 지분증권에 관하여 협의된 계약서에 따라 의제잔여재산으로부터 분배받게 될 금액을 의미한다[단, 상환전환신주에 대한 우선분배액의 산정은, 신주가 위 분배의 기준일에 아직 전환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본 우선주식'의 수(분수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이때, '의제잔여재산'의 산정은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 a) (가)호 사유의 경우: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기타 유사한 거래에서 결정된 회사의 총 주식가치로 한다.
- b) (나)호 사유의 경우: 영업/자산의 양도대금에 회사의 잔여 순자산 가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부채의 인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과 부채가액을 합산한 다음 회사의 잔여 순자산가치를 다시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c) (다)호 사유의 경우: 1주당 신주발행가액 또는 구주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가액으로 한다. 단 신주 발행과 구주매각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일련의 거래 로써 행해진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서의 총 발행가액 및 총 매매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대 상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1주당 주식 가액으로 한다.
- 제 3조 상환에 관한 사항
- (1) '본 우선주주'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 (2) 상환청구기간: '본 우선주식'의 발행 후 3년째가 되는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으로 한다

## (3) 상화가액:

- (i) (¬) '본 우선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금 120,000원. 다만, '본 우선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본 우선주식'의 발행을 통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ㄴ) '본 우선주식'의 발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8%(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상환기일까지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 (ii)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상환 전에 상환가액과는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
- (4) 상환방법: 회사는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상환기일)에 '본 우선주주'로부터 해당 주권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본 우선주주'에게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제 4조 전환에 관한 사항

- (1) '본 우선주주'는 제2항의 전환기간 내에 그가 소유한 '본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을 가진다.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보통주식을 '전환신주'라 칭한다.
- (2)전환기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3)전환비율과 전환가액: '본 우선주식'은 그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나눈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본 우선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금 120.

592734

000원)으로 하며, 최초의 전환비율('본 우선주식' 1주당 전환신주 수의 비율)은 1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협의된 계약서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전환가액은 후속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에 반비례하여 상향 조정된다. 제5조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유한 '본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2016 년 07 월 12 일 설정 2016 년 07 월 14 일 등기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 제1조. 의결권

제2종 우선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제2조.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

- ① 제2종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우선배당액은 액면가액의 연복리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 되어 누적된다.
- ③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행한 후에도 분배 가능한 잔여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은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이 경우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행사되었을 경우 최대로 발행되었을 수량의 전환신주(전환으로 인해 새로이 발행되는 보통주식을 말하며, 이하 같다)를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청산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는 다음에 의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잔여재산분배에 앞서 다른 무담보채권자들과 평등하게 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1. 우선분배액: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이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금액
- 2. 참가분배액: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재 산이 있어서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행해지는 경우에 제2종 전환우선주식이 보통 주식과 함께 참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받는 금액. 단, 이때 제2종 전환우 선주식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더라면 최대로 발행되 었을 전환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항의 목적상 '우선분배액'은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주식병합 또는주식분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상응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고,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해 발행된 제2종 우선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및 미지급된 배당결의금액과 누적배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항의 목적상 '참가분배액'은 '우선분배액'의 2배를 한도로 하며, 제2호에 의해 산정한 '청산분배액'이 '참가분배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분배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분배액'으로 한다. 단, 제1호에 의한 '우선분배액'을 차감한 잔여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보통주식에 대한 분배액이 '우선분배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2종 우선주주는 잔여재산의 분배 이전에 언제든지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식으로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본항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등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그 분배는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격은 다음과 같이결정된다.

592734

- (i) 해당 유가증권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기타 제2종 우선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들이 인정하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분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일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그 이전 30일 동안의 가중평균 종가.
- (ii)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장외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 기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격. 다만, 기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주주들이 이사회가 결정한 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국내4대 회계법인 중 회사가 선정하고 그 반대주주들이 승인하는 2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로 한다. 만일 회사가 반대주주들의 반대의사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계법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주주들이 이를 선정한다. 상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단, 본항의 목적상 회사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가.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x)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y)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 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교환된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z)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나.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 포함)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현물출자, 실시권 설정 및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

다. 회사의 신규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발행, 회사나 주주가 소유하는 기존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단, 본항의 목적상 경영권의 이전이라 함은 주식의 인수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주식총수(단, 전환주식과 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당해 거래(복수의 순차 거래가 결합된 경우에는 최종 거래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 또는 증권에 관한 전환권, 인수권 또는 교환권이 행사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를 말한다.

라. 기타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

#### 제3조. 상화청구권

- ① 제2종 우선주주는 제2항의 상환청구기간 내에 언제든지 제2종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상환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 상환청구기간은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 후 3년째가 되는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상환청구기간")으로 한다.
  - ③ 제2종 우선주식의 상환가액은 다음과 같다.
- (i) (¬)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금 466,672원. 다만,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주식병합, 주식분할 또는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을 통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ㄴ)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8%(복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상환기일까지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592734

- (ii)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 (주식의 분할 내지 병합 등을 포함하여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은 상환전에 상환가액과는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
- ④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이하 "상환청구서" 라 한다)로써 한다. 상환청구서에는 제2종 우선주주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연락처, 상환사유,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상화청구의 효력 발생
- 상환청구의 효력은 회사가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 당시 회사에게 유보된 배당가능 이익의 총액(이하 "상환재원"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발생하며 이를 초과하는 상환청구는 무효로 한다.
- ⑥ 회사는 상환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하 "상환기일"이라 한다)에 제2종 우선주주로부터 해당 주권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제2종 우선주주에게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18%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 ⑦ 회사가 매회 상환할 주식의 최소 수량은 1주로 하며, 그 미만의 단주는 절사한다.
- ⑧ 제2종 우선주주는 상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상환가액이 지급되기 이전까지는 그 주식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권이 행사되면 그 상환청구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회사는 상환의무를 면한다.
- ⑨ 제2종 우선주주의 상환청구권은 그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 으로 전환되는 경우 즉시 소멸한다.
- ⑩ 제2종 우선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른 회사의 상환의무는 당해 상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상환재원을 한도로 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회사의 경영이나 재무 상황에 의해 변경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 제4조. 전환권

- ① 제2종 우선주주는 제2항의 전환기간 내에 그가 소유한 제2종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본조의 목적상 전환으로 인해 발행될 보통주식을 "전환신주"라 칭한다.
- ②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해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전환기간"이라 한다)은 그 발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③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제2종 우선주주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최소한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청구서에는 전환의 의사, 전환청구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권에 기재될 주주의 성명및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는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주권을 그 전환을 청구한 제2종 우선주주 또는 그가 지명한 자에게 신속하게 교부한다.
  - ④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전환의 효력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발생한다. 전환신주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상법 제350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전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전환신주에 대 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본다.

⑤ 전환비율과 전환가액

제2종 우선주식은 그 발행가액을 전환 당시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최초의 전환가액은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가액(1주당 금 466,672원)으로 하며, 최초의 전환비율(제2종 우선주식 1주당 전환신주 수의 비율)은 1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은 제⑥

592734

항에 따라 조정되며, 조정된 전환가액은 후속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효하다. 또한, 전환비율은 전환가액의 하향 조정에 반비례하여 상향 조정된다.

⑥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1. 전환가액 미만의 주식발행에 의한 조정
- (가)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에 추가보통주식(아래 (바)목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 직전의 전환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조정전 전환가액X{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나) 전환가액의 조정은 1원 미만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 본호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액은 하기 (마)목의 (iii) 및 (iv)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직전의 전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추가보통주식의 납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입 금액을 추가보통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라) 추가보통주식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한 납입대금이 현금 이외의 자산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사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한 당해 자산의 공정가액을 발행가액으로 본다. 다만, 제2종 우선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주들이 이사회의 평가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그 반대주주들이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마)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 전후를 불문하고, 보통주식의 매입옵션 또는 신주인수권 (본 계약의 목적상 "보통주식옵션등"이라 한다), 보통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하 "전환등"이라 한다)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지분유가증권"이라 한다), 혹은 지분유가증권의 매입옵션 또는 인수권(본 계약의 목적상 "지분유가증권옵션등"이라 한다)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호의 목적상 다음에 의한다. 본호 (마)목의 증권 및 옵션등은 본호 (바)목의목적상 각 그 전환등 또는 행사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i) 보통주식옵션등의 행사(시간의 경과를 포함한 행사 조건의 충족을 가정 하되, 잠 재적 희석방지를 위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로 인해최대한 발행 또는 교부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이 그 옵션등의 발행시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보통주식 옵션등에 관한 최소 행사가격(잠재적 희석방지를 위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과 당해 옵션등의 발행으로 회사가 수령한 대가(본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산정한다)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ii) 지분유가증권의 전환등(시간의 경과를 포함한 전환 또는 교환 조건의 충족을 가정하되, 잠재적 희석방지를 위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혹은 지분유가증권옵션등이 행사되고 그에 따라 발행된 지분유가증권의 후속적인 전환등으로 인해 최대한 발행 또는 교부될수 있는수만큼의 보통주식이 당해 지분유가증권 또는 지분유가증권옵션등의 발행시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 경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유가증권 및 지분유가증권옵션등의 발행으로 회사가 수령한 대가(발생 이자 또는 배당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현금은 제외 한다)와 지분유가 증권의 전환등 또는지분유가증권옵션등의 행사(잠재적 희석방지를 위한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에 의하여 회사가 수령할 최소한의 추가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위의대가 및 추가대가는 본호 (다)목 및 (라)목에따라 산정한다).
  - (iii) 보통주식옵션등 또는 지분유가증권옵션등의 행사, 혹은 전환 유가증권의 전환등

592734

에 의해 발행될 보통주식의 수, 혹은 회사에 지급할 대가에 변경(희석방지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경을 포함 한다)이 생기는 경우전환가액은, 당해 옵션등 또는 유가증권을 사용 함으로써 영향받거나 이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한도내에서, 당해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재산정된다. 그러나, 그 옵션등의 행사 혹은 유가증권의 전환등에 의해 실제 보통주식이 발행되거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을 행하지 않는다.

- (iv) 보통주식옵션등 또는 지분유가증권옵션등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지분유가증 권상의 전환등에 관한 권리가 소멸 하는 경우 전환가액은, 당해 옵션등 또는 유가증권을 사용 함으로써 영향받거나 이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한도내에서, 그 옵션등의 행사혹은 유가증권의 전환등에 의하여 실제로 발행된 수의 보통주식(및 위 소멸 후에도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지분유가증권)에 국한시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산정 한다.
- (v) 위 (i) 및 (ii)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보통주식의 수 및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발행가액은 (iii) 또는 (iv)에 규정된 형태의 변경, 소멸 또는 만기 도래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조정된다.
- (바) "추가보통주식"은 아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에 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보통주식과 본호 (마)목 소정의 유가증권 및 옵션등을 의미한다. 단, (마)목 소정의 유가증권 및 옵션등은 (바)목의목적상 각 그 전환등 조건 또는 행사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 (i) 제2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되는 보통주식
  - (ii) 제2종 우선주식 및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
- (iii) 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에 의하여 부여되는 주식매수 선택권 및 그 행사로 인해 발행하는 보통주식.
- (iv) 회사가 다른회사의 주식의 전부를 취득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 전부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거래에서 발행되는 보통주식
  - 2. 주식분할과 무상증자 등에 의한 조정

회사가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분할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거나 또는 보통주식 또는 보통주식등가물을 배당 또는 무상분배 받을 보통주주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 기준일(또는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배당, 주식분할, 무상증자 등이 행하여지는 날. 이하 같다)에 분할, 무상증자, 배당 또는 분배를 행한다. 단, 이 경우 제2종 우선주식은 그 기준일 직전에 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사유를 불문하고 그러한 분할, 무상증자, 배당 또는 분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종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기준일의 익일에 적절하게 감액 조정된다. 이때 그 조정의 방법은 제2종 우선주식의 전환에 의하여발행될 보통주식의 총수가, 기발행 보통주식의 수와 보통주식등가물로부터 발행될 수 있는보통주식(상기 제1호 (마)목에 규정된 발행간주의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을 말한다)의 수를 합산한 주식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로 증가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감액하는 방법에 의한다.

"보통주식등가물"이라 함은 보통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유가증권이나 그 소유자에게 보통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는 옵션 기타 권리를 말한 다.

3. 주식병합에 의한 조정

제2종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기발행 보통주식의 수가 주식의 병합에 의해서 감소되는 경우, 그 병합 기준일에 제2종 우선주식도 보통주식과 동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병합된다, 단

592734

- , 사유를 불문하고 제2종 우선주식이 병합될 수 없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기준일의 익일에 적절하게 증액 조정된다. 이때 그 조정의 방법은 제2종 우선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될 보통주식의 수가,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함께 동 일한 비율로 감소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증액한다.
- 4. 회사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i)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ii)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거나 (ii)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iv)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2종 우선주식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을 정하여 발행해서는 아니 된다.
- 5. 회사는 본항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신주의 발행 기타 여하한 거래나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환주식이 그와 같이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된 가액으로 유효하게 전환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회사가 보통주주들에 대해서 제⑥ 항 2호에 규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의 형태로의 이익분배, 채무증서의 발행, 자산(현금에 의한 이익분배를 제외) 또는 권리의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종 우선주주는 그 이익분배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통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전환신주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분배 등을 비례적으로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단주에 대해서 전환 시에 적용된 전환가액을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⑨ 제⑥ 항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또는 재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 또는 재조정을 행하고 제2종 우선주주에게 그 조정 또는 재조정의 원인사실과 결과를 자세히 기재한 증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한다. 회사는 제2종 우선주주의 서면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 대해서 (i) 그 조정 또는 재조정, (ii) 전환주식의 전환가액, (iii) 전환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수령할 보통주의 수 혹은 자산의 가액을 기재한 동일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① 회사가 현금 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 그 종류를 불문하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등 회사로부터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를 받을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2종 우선주주에게 기준일 20일 전에 그 이익배당, 권리의 부여등을 위해서 결정된 기준일과 이익배당, 권리의 수량 및 성질을 특정하여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제2종 우선주식이 본조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기발행 제2종 우선주식은 취소되며 회사는 이들을 재발행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제2종 우선주식이 존속하는 동안 발행된 모든 제2종 우선주식에 관한 전환권을 수시로 행사하기에 충분한 보통주식의 수를 유보하고 있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변경등기를 행한다. 제5조. 존속기간

제2종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2종 우선주주가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2종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2017 년 09 월 13 일 설정 2017 년 09 월 13 일 등기

제3종상환전환우선주식

제1조 (의결권)

592734

- ① "본건 종류주식"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이 제2절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2조 (배당)
- ① "본건 종류주식"는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영업연도별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라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은 종류주식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본건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 제3조 (청산 잔여재산분배)

- ①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투자금 및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청산일까지의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기지급된 배당금은 제외)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 제4조 (신주인수권)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보통주 주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와 본 계약에 준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 (전환권)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전환비율)

① 전환비율은 "본건 종류주식" 일(1)주당 "회사"의 보통주 일(1)주로 한다.

59273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전환비율이 변경 된다. 각호는 누적적으로 적용 된다.
- 1. "신주 등 발행"의 경우: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신주 등 발행"(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단, 신주인수계약서와 동시에 진행 중인 보통주 계약에 따른 신주 등 발행의경우는 제외)
  - 2. 주식의 분할합병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3. 무상감자의 경우: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 4. 무상증자 등의 경우: 무상증자,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등으로 인해 주금 납입없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인 "투자자"는 "회 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 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 = Bi \times (Ac / Bc - 1)$

Ni: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인 "투자자"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 5. IPO 등의 경우: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IPO 공모단가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6. 경영권 매각 등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이에 기준이 된 "회사"의 주식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한다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동 평가가액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③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규정 적용 후 전환 비율이 적용 전 전환 비율보다 하회하는 경우 적용 전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제7조 (전환절차)

전화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은 "투자자"가 전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592734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 ①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② 전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 (일반상환권)

- ① "투자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년 경과일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특별상화권)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한 일반상환권 청구기간 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1. 신주인수계약서상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2.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경우
- 3. "회사"가 제27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 4.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주인수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 5.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6.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이를 신청하여 [15]일 이내에 취하, 각하 또는 기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 7.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신주인수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8.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② 특별상환권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그 사실 및 2개월 내의 합리적 시정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투자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종류주식"는 별도의 조치 없이 전조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단의 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상환가액)

"본건 종류주식"의 일(1)주당 상환가액은, "투자자"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상환의무)

- ①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592734

- ③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제2항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회사"와 함께 위약벌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19 년 06 월 26 일 설정 2019 년 06 월 26 일 등기

# 제4종상화전화우선주식

#### 제1조 (의결권)

본건 종류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이 제2절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주인수계약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를 전제로 그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신주인수계약 제15조 제1항에 의한 배당결의가 있었음에도 우선배당액 중 미지급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존속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상환권이 행사되었으나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환권의 행사기간이만료하여도 상환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본건 종류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존속한다. 제2조 (배당)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영업연도별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라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은 종류주식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 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하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 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본건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제3조 (청산 잔여재산분배)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투자금 및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청산일까지의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기지급된 배당금은 제외)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 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592734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제2절 전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전환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종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전환비율)

전환비율은 본건 종류주식 일(1)주당 회사의 보통주 일(1)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전환비율이 변경 된다. 각호는 누적적으로 적용 된다.

신주 등 발행의 경우: 회사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신주 등 발행(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주식의 분할∙합병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무상감자의 경우: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무상증자 등의 경우: 무상증자,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등으로 인해 주금 납입 없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인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 유한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 식을 따른다.

 $Ni=Bi \times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인 투자자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IPO 등의 경우: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IPO 공모단가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경영권 매각 등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이에 기준이 된 회사의 주식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그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한다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동 평가가액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규정 적용 후 전환 비율이 적용 전 전환 비율보다 하회하는 경우 적용 전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제6조 (전환절차)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592734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전환은 투자자가 전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 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 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 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 의 규정을 따른다.

제3절 상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일반상환권)

투자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 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9조 (특별상환권)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한 일반상환권 청구기 간 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본 계약상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

나 유출시키는 경우

회사가 본건 주주간 계약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 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투 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이를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취하, 각하 또는 기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 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특별상환권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그 사실 및 2개월 내의 합리적 시정기간을 정 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투자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본건 종류주식은 별도의 조치 없이 전조의 상화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단의 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상환가액)

592734

본건 종류주식의 일(1)주당 상환가액은, 투자자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단,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상환의 경우,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상환의무)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제한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제2항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회사와함께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 %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22 년 04 월 01 일 설정

2022 년 04 월 04 일 등기

제5종상환전환우선주식

[1] 의결권 및 배당에 관한 사항 제1조 (의결권)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종류주식이 제2절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를 전제로 그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제2조 제1항에 의한 배당결의가 있었음에도 우선배당액 중미지급분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액 지급할 수 있을 때까지 존속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상환권이 행사되었으나 상환되지 않은 경우 상환권의 행사기간이 만료하여도 상환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본건 종류주식은 전환상환우선주식으로 존속한다 제2조 (배당)
-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영업연도별 액면 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회사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라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은 종류주식 발행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02일 13시06분38초

592734

- ③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종류주식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본건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 제3조 (청산 잔여재산분배)

- ①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투자금 및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청산일까지의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기지급된 배당금은 제외)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이 경우 청산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 ②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 다
- [2] 전환에 관한 사항

## 제4조 (전환권)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전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제5조 (전환비율)

- ① 전환비율은 본건 종류주식 일(1)주당 회사의 보통주 일(1)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전환비율이 변경 된다. 각호는 누적적으로 적용 된다.
- 1. 신주 등 발행의 경우: 회사가 1주당 51,346원(이하 "기준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신주 등 발행(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 2. 주식의 분할∙병합의 경우: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 3. 무상감자의 경우: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 4. 무상증자 등의 경우: 무상증자,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등으로 인해 주금 납입없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인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 $Ni=Bi \times (Ac/Bc-1)$

Ni :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인 투자자에게 무상지급 되는 종류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 보유 종류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5. IPO 등의 경우: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가격 또는 그 당시의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중 낮은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I

592734

PO 공모단가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6. 경영권 매각 등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 이에 기준이 된 회사의 주식 주당 평가가액의 70%가 기준가격 또는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 중 낮은 금액을 하회한다면,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동 평가가액의 70%가 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 ③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호의 규정 적용 후 전환 비율이 적용 전 전환 비율보다 하회하는 경우 적용 전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제6조 (전환절차)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투자자는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 2. 전환은 투자자가 전호의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 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당해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권미발행확인서를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전화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 ①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② 전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 1조의 규정을 따른다.
- [3] 상환에 관한 사항

제8조 (일반상환권)

- ① 투자자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 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 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9조 (특별상환권)

-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한 일반상환권 청구기간 전이라도 회사에 대해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1. 본 계약상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2.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경우
- 3. 회사가 본건 주주간 계약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투자자의

열람일시 : 2024년09월02일 13시06분38초

592734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 4.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 5.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감사범위제한으로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일 경우
- 6.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이를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취하, 각하 또는 기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 7.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8.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 ② 특별상환권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그 사실 및 2개월 내의 합리적 시정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투자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종류주식은 별도의 조치 없이 전조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단의 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상환가액)

본건 종류주식의 일(1)주당 상환가액은, 투자자의 일(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단,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상환의 경우,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상환의무)

- ① 회사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투자자의 상환권 행사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 도 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는 제2항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제한 제1항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제2항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회사와 함께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 시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20%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만 충당할 수 있는 상환기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22 년 09 월 01 일 설정 2022 년 09 월 05 일 등기

##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100 년

당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해당일에 자동 해산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회사계속의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00분의 90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592734

- 1.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1)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 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2) 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 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3) 회사의 지배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 2.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지적재산권 포함)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현물출자, 실시권 설정 및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
- 3. 회사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의 신규 발행, 회사나 주주가 소유하는 기존 주식(주식 연계 증권 포함)의 매매, 또는 양자가 결합된 동시 또는 순차의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단, 본항의 목적상 지배권의 이전이라 함은 주식의 인수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주식총수(단, 전환주식과 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당해 거래일 직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복수의 순차 거래가 결합된 경우에는 최종 거래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 또는 증권에 관한 전환권, 인수권 또는 교환권이 행사 되었을 경우 최종적으로 발행되었을 보통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래를 말한다.
- 4. 기타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

2017 년 08 월 28 일 설정 2017 년 09 월 13 일 등기

# 주 식 매 수 선 택 권

-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본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주식 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 2016 년 06 월 23 일 설정 2016 년 07 월 14 일 등기 >
  - 1)-1 본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의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 1)-2 본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 < 2024 년 03 월 29 일 변경 2024 년 04 월 16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92734

-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 가액.
  - < 2016 년 06 월 23 일 설정 2016 년 07 월 14 일 등기 >
- 1) 본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 등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4)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 2022 년 12 월 28 일 변경 2023 년 01 월 06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나.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다.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수 있다.
    - < 2016 년 06 월 23 일 설정 2016 년 07 월 14 일 등기 >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 1)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의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 2016 년 06 월 23 일 설정 2016 년 07 월 14 일 등기 >

592734

- 1)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의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2017 년 06 월 29 일 변경 2017 년 06 월 29 일 등기 >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
  - 가.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나.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6 년 06 월 23 일 설정 2016 년 07 월 14 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15 년 12 월 24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5 년 12 월 24 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열 람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열람일시 : 2024년09월02일 13시06분38초